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 2024 - 234호

한국전통문화대학교
공무직 근로자(시설물관리원 다급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근로자(시설물관리원 다급)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2일

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

□ 최종합격자(괄호 안은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)

채용분야	직 종	근무 예정지	최종 합격자	
			응시번호	성명(전화번호 뒤 4자리)
시설물관리원 다급	공무직	부여	002	황○연 (3860)

□ 예비 합격자

* 최종 합격자의 채용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계약포기, 선발 취소,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시 예비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.

채용분야	직 종	근무 예정지	최종 합격자	
			응시번호	성명(전화번호 뒤 4자리)
시설물관리원 다급	공무직	부여	001	이○하(1757)

□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

- 제출기간 및 방법: '2024. 10. 7.(월) 이메일 제출(ksm9012@korea.kr)
- 제출서류
 -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부 (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통보서로 대체 가능)

- 결격사유 확인서 1부(붙임1 양식)
- 보안 서약서 1부(붙임2 양식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붙임3 양식)
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(붙임 4 양식)
- 주민등록등본·초본 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 각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기본증명서(‘일반 기본증명서’) 1부
-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영함판(3X4) 사진 이미지 파일(jpg)
-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
□ 기타사항

- 출근 장소, 시간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**다음의 경우에는 합격통보 및 채용 후에도 채용이 취소 됩니다.**
 -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
 -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불합격 판정 시
 -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 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확인 시
- 최정합격예정자의 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총무과 시설계 채용담당자(041-830-723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

결격사유 확인서

- 성 명:
- 생년월일:

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, 위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4 . . .

확인자: (인)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

[붙임 2]

서 약 서

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설물관리원 다급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,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. 단,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2.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.
3. 출·퇴근시간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.
4. 우리 대학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5.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.

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,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서약자 : (인)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

